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9,762,295	12,892,869
일반회계	383,709,438	11,511,283
특별회계	46,052,857	1,381,586
공기업특별회계	22,335,780	670,07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496,179	464,88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839,601	205,188
기타특별회계	23,717,077	711,512
주택사업특별회계	371,126	11,134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53,558	13,6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75,362	50,26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864,276	25,928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438,079	43,14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848,105	25,443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10,698,082	320,94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48,277	73,4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49,070	76,472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21,614	39,648
기반시설특별회계	1,049,528	31,486

제 2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57,37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